

각 위

회 사 명	J 트 러 스 트 주 식 회 사
대표자 직위·성명	대표이사 사장 후지사와 노부요시
(종 목 번 호	8 5 0 8)
(상 장 거 래 소	오사카증권거래소 시장 제2부)
문 의 처	이 사 구 로 다 가 즈 노 리
전 화 번 호	0 3 - 4 3 3 0 - 9 1 0 0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침’ 의 일부개정에 관한 공시

당사는 금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침’ 의 일부개정을 결의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변경된 부분은 밑줄표시 하였습니다.

아 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기본방침

1. 이사, 사옹인의 직무집행이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당사는 ‘윤리헌장’, ‘기업이념’ 및 ‘행동이념’ 을 경영의 기본으로 삼고 업무 운영의 효율화, 정보의 정확성,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확충·강화를 통해 회사자산의 건전화를 추구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령, 정관 준수는 물론 별도로 정한 ‘컴플라이언스 규칙’ 등에 근거한 행동규범·기업 윤리를 철저히 준수한다. 또한, 이사 및 사옹인은 이러한 사회규범·윤리·법령 등의 준수 및 전파에 솔선수범함으로써 공정하고 적절한 기업활동 실현과 회사와의 조화를 도모한다.

이와 같은 체제의 감시·재검토·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컴플라이언스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추가적인 강화를 추진한다.

2. 이사의 직무집행 관련 정보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체제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소관 부서는 법정 의사록 및 임의 경영회의 의사록 외 중요 직무집행 관련 문서 등을 그 첨부자료와 함께 사내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절하게 보관하고 관리한다. 또한, 본건 자료는 이사·감사역가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손실 위험 관리에 관한 규정 기타 체제

리스크 관리는 이하의 내용으로 추진한다.

- (1) ‘리스크관리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상의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나 체제를 정하고, 상시 리스크를 인식한다.
- (2) 상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순서를 기술한 ‘리스크관리매뉴얼’을 제정하고, 잠재된 리스크에 대한 정보 추출 및 평가를 실시하여 신속하고 실천적인 대처를 가능케 한다.
- (3) 상기에도 불구하고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리스크총괄책임자를 본부장으로서 하는 대책본부를 발족하여 신속한 조사와 대응을 실천한다.
- (4) 내외적으로 예상되는 향후 리스크를 정확히 예측·정리하여 미리 대책을 강구하는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내부통제·리스크관리부와 연대하여 당사 및 자회사의 각 부분은 체제를 한층 더 강화한다.

4. 이사의 직무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1) 이사회는 월 1 회 개최하는 정기이사회와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이사회에서 경영의 중요사항 및 개별 안건의 결의를 실시한다. 또한, 당사 및 자회사 사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월 2 회 개최하여 실적 및 각 사업부문의 업무진척도를 관리하고 업무집행상황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실시한다.
- (2) 전자품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외에서도 품의의 열람, 결재를 가능케 하고, 의사결정의 신속화 및 경영의 효율 향상을 도모한다.
- (3)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은 ‘조직규정’, ‘직무분장규정’ 및 ‘직무권한규정’ 등에 따라 담

당임원이 각 책임자에게 지시하여 집행한다. 또한, 내용이 부문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담당
임원간에 조정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집행체제를 확보한다.

5. 당사 및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의 업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제

- (1) 당사 임직원이 이사 또는 감사역로 취임하여 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자회사 역시 당사의 내부감사부문 및 감사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 사장이 직접 보고를 받는 체제를 구성한다.
- (2) 자회사 계수관리는 재무 및 경리부문이 분장하고 연결결산 작성을 관리·감독한다.
- (3) 당사 및 자회사 임원으로 구성된 경영회의를 통해 자회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적
절한 대응을 실시한다.
- (4) 자회사 중 주식회사는 이사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6. 감사역 직무를 보조해야 할 사용인 관련 체제 및 해당 사용인의 이사로부터의 독립성에 관한 사 항

- (1) 감사역이 필요로 하는 경우 직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을 둔다. 이 경우 해당 사용인의 임명, 이
동, 평가 등 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감사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실시하며, 그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2) 감사역 직무를 보조하는 사용인은 당사 및 자회사의 업무집행 관련 직무를 겸무하지 않도록
한다.

7. 이사 및 사용인이 감사역에 보고하기 위한 체제 및 기타 감사역의 감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제

- (1) 이사 및 사용인은 감사역의 요청에 따라 업무 집행 상황을 보고한다.
- (2) 이사 및 사용인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사실 발생이 우려될 경우나 임직원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역에 보고한다.
- (3) 감사역은 상시 필요에 따라 이사 및 사용인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4) 감사역은 이사회 및 경영회의 외에 의사결정 과정, 집행상황 파악을 위해 수시로 위원회 등의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또한, 사장과의 정기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경영방침 확인 등 의사소통에 힘쓴다.
- (5) 내부신고창구 또는 외부상담창구의 적절한 운용·관리로 법령위반 기타 컴플라이언스상의 문제를 감사역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체제를 확보한다.

8. 반사회적 세력 배제를 위한 기본 자세 및 정비 상황

- (1) 당사 및 자회사는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를 일절 차단하고, 반사회적 세력에 의한 부당요구에는 의연한 자세로 대응한다.
- (2) 반사회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부서는 경영관리부로 하고 이외 사내 각 부문장, 경찰 등의 외부 전문기관과 긴밀하게 연대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이 상